

#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

## 1. 변경 사유
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학지원의 행·재정 권한을 중앙(교육부)에서 지자체로 위임 및 이양
- 서울시 라이즈(RISE)사업 전담 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지정(2023년 9월) 됨에 따라 2025년부터 서울라이즈(RISE)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정원 증원 필요
  -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기관 지정 안내[서울시 경제정책과 -10829(2023. 9. 15)]
  -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추진 관련 참고사항 안내[(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-5252, 2024. 9. 2.)]

## 2. 주요 내용

- 『서울라이즈센터』 신설·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 개정(안 제20조)
  - 「서울라이즈센터」 원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운영 : 기구표[별표 2]
  - 「서울라이즈센터」 정원 3명 증원 : 정원표[별표 3]

※ 정원 3명 : 부연구위원 1명, 연구원 2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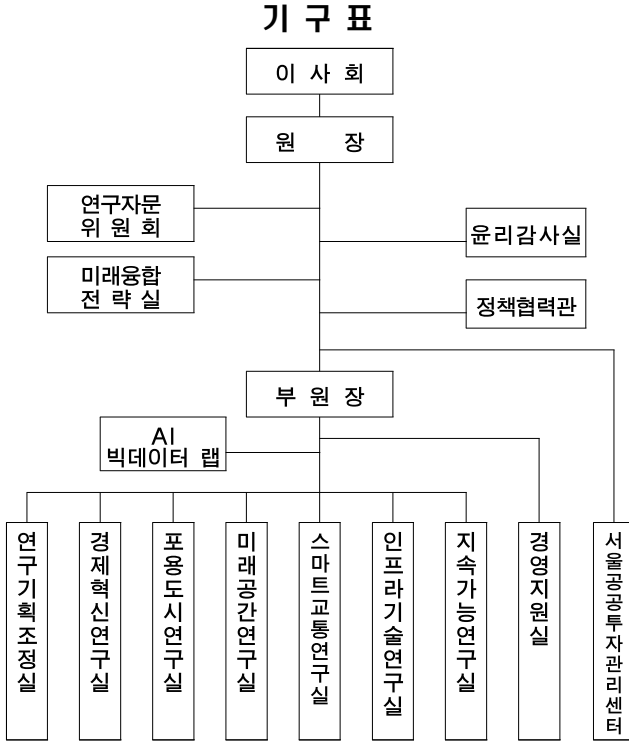
## 3. 시 행 일

-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대조표

## 현 행

제20조(직제 및 정원) ① 연구원의 조직은 [별표 2], 정원은 [별표 3]과 같다.  
 ② (생략)  
 [별표 2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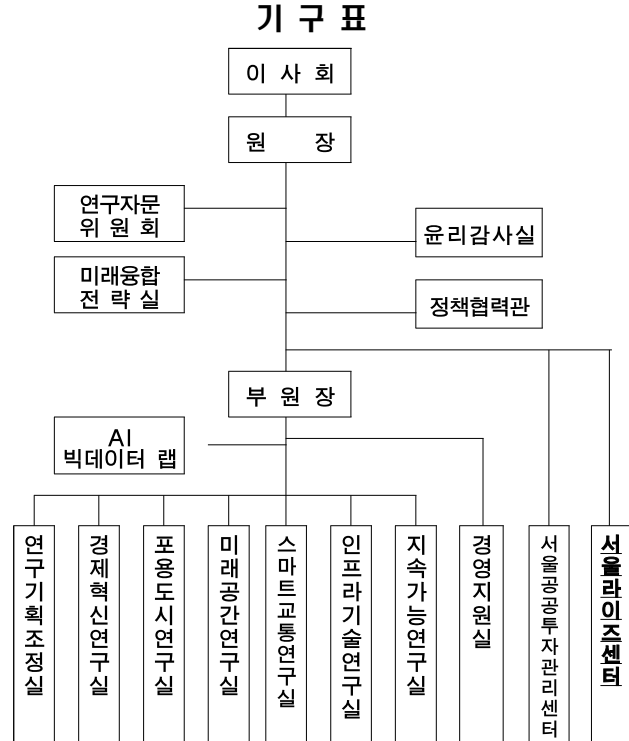
[별표 3]

### 정 원 표

직 종	직 급	정 원
계		<b>301</b>
임원(상근)	원 장	1
연구직	선임연구위원	<b>115</b>
	연구위원	
	부연구위원	<b>98</b>
	연구원	
일반직	1 급	7
	2 급	18
	3 급	31
	4 급	15
공무직		16

## 개 정 안

제20조(직제 및 정원) ① 연구원의 조직은 [별표 2], 정원은 [별표 3]과 같다.  
 ② (현행과 같음)  
 [별표 2]



[별표 3]

### 정 원 표

직 종	직 급	정 원
계		<b>304</b>
임원(상근)	원 장	1
연구직	선임연구위원	<b>116</b>
	연구위원	
	부연구위원	<b>100</b>
	연구원	
일반직	1 급	7
	2 급	18
	3 급	31
	4 급	15
공무직		16

# 서울라이즈(RISE)사업 추진계획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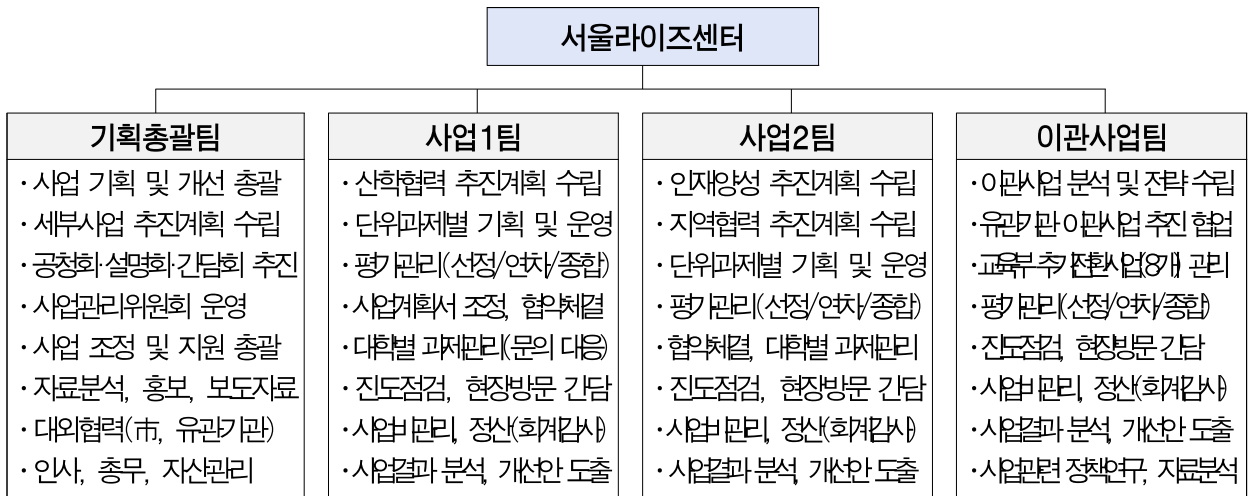
## □ 추진배경

- 대학 지원의 행·재정 권한을 중앙(교육부)에서 지자체로 위임 및 이양
-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의 효과적 수행 필요
  - ※ 서울시 라이즈(RISE)사업 전담 기관으로 서울연구원 지정(2023년 9월)

## □ 추진계획(안)

- 『서울라이즈센터』 신설 · 운영(안)

- 조직체계 : 1센터, 4팀



- 인력운영 : 총 20명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 초기 시점을 고려하여 정규직 정원 3명 증원(부연구위원 1, 연구원 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라이즈(RISE)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일반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으로 증원</li> </ul> </li> <li>· 서울연구원 기존 직원 일부 배치(약 4명) 및 서울시 공무원 파견(약 2명) 등 시행</li> <li>· 이외 정원외직원(계약직)으로 운영</li> </ul>
--

- 향후 5개년 사업의 추진체계

- 사업추진 방향 : 대학의 혁신과 성장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로 연계
- 사업의 설계 : 서울이 가진 강점 활용 ⇨ 4개 프로젝트, 15개 단위과제 설계

- 단계별 추진계획

- 도입기(2025년~) : 대학 자율성 확산 위해 추진 ⇨ 단위과제 통합해 사업 공모
- 성장기(2027년~) :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⇨ 서울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- 확산기(2029년~) : 중앙정부 관련 사업을 흡수 ⇨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추진

○ 2025년 사업 세부 추진계획(안)

프로젝트	세부 사업	성과목표
①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	①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<b>국비공모 ①</b> ② 첨단·미래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<b>국비공모 ②</b> ③ 미래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 <b>국비공모 ③</b>	<b>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10개 대학 육성</b> 본 글로벌 창업기업 40개 해외 인재유치 5백명 글로벌 역량 강화 5백명
② 서울 전략 산업 기반 강화	④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<b>국비공모 ⑤</b> ⑤ AI·BIO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확산 <b>국비공모 ⑥</b> ⑥ 창조산업 인재 양성 <b>국비공모 ⑦</b>	<b>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24개 대학 육성</b> AI·BIO 신기술 사업화 12개 AI·BIO R&D 지원 150건 창조산업 인재 5백명
③ 지역 사회 동반 성장	⑦ 지역 현안 문제 해결 <b>국비공모 ⑧</b> ⑧ 서울-지방 공유·협력 활성화 <b>국비공모 ⑩</b> ⑨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 생태계 구축 <b>국비공모 ⑪</b>	<b>지방 연계 인재 500명 육성</b> 지역 문제 해결 75개 서울-지방 연계 인재 500명 늘봄 프로그램 개발 100개
④ 평생·직업 교육 강화	⑩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 <b>국비공모 ⑨</b> ⑪ 고숙련 전문기술 인력양성 <b>국비공모 ⑩</b>	<b>직업·평생교육 등 시민 3.9만명 참여</b> 고숙련 전문인력 8백명
⑤ 대학 창업 육	⑫ 서울캠퍼스타운 <b>市 연계사업</b>	<b>대학창업 1,000개팀 육성</b>

## 관련 근거 등

### □ 추진배경

#### ○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
제21조(대학과 지역의 협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9.>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, 고등교육기관,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(이하 “지역협업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지역협업위원회의 장”이라 한다)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2.]

○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6조

제16조(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)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8. 13.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

가. 지방대학,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

나.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,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

2.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

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

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